

부 과 금

석유사업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과정의 윤활유업계 부과금부담

'79년 이후 현재까지 윤활유업계에서는 기금을 내지 않았으나 '95년부터는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그 동안의 정부에서 기금운용실적 및 새로운 부과금의 징수 및 부과금의 환급방법과 앞으로의 부과금 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박 상 태(협회 업무부장)

〈목 차〉

- | | |
|-------------------------------------|---------------------------------------|
| 1. 석유사업기금 운용현황 | 3.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부과근거 및 납부·환급절차 |
| 가. 개요 | 가. 석유(윤활유 및 윤활기유)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석유사업법) |
| 나. 기금운용실적 | 1) 부과근거 |
| 다. 1994년도 기금운용 계획 | 2) 부과금의 징수비율 |
|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환을 계기로 본 국가재정체계 | 3)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 가. 서론 | 나.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환급 |
| 나. 예산 편성 절차 | 1) 부과금 환급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1994-6호) |
| 1) 기금과 예산의 비교 | 2) 부과금 환급대상 및 심사업무처리요령 |
| 2) 예산의 편성절차 | 4. 기금의 운용내역(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운용목적(법 제1조) |
| | 나. 기금의 세입, 세출(법 제6조) |

1. 석유사업기금 운용현황

가. 개요

정부는 제1차 석유파동이후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설치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을 설치한 주목적은 첫째, 평시에 석유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정부가 석유를 비축함으로써 석유파동이 발생한 비상시에 석유공급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둘째, 다른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석유탐사 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셋째,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합리화하고, 넷째, 여유자금을 확보했다가 원유가격이 일시에 폭등할 때에 완충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었고 1990년 8월에도 뜻밖의 결프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바렐당 15~16불에 머물던 국제원유가격이 39불 수준을 넘었던 적이 있었다.

세계 석유의 2/3가 매장되어 있는 중동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때마다 대부분 석유소비국에서는 석유수급 불안과 가격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성해 온 기금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석유류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왔다.

1993년말까지 석유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은 6조 8천 727억원이며, 이는 석유사업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 왔고, 기금규모의 증대에 따라 보다 완벽한 사업수행과 통제를 위하여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민간관리기금의 형식으로 관리하던 기금운용을 1991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계획과 결산까지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며, 1993년 신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재정부문 신경제계획에 따라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자원관련 5개 기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제도로 통합함으로써 '95년부터는 기금형태가 아닌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나. 기금운용실적

1993년말까지 기금지원실적은 총 8조 338억원으로 부문별로 보면, 원유도입선다변화, 석유품질관리, 폐광대책 및 탄가대책, 에너지기술사업 및 한국석유개발공사 운영비등에 2조 3,655억원을 보조지원하였고, 석유비축사업, 유전개발사업, 장거리 송유관건설사업에 1조 2,93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 도시가스사업, 전원개발사업, 석탄사업, 유전개발사업등에 3조 5,074억원, 재정예탁 8,670억원을 지원하였다.

석유사업기금운용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79~'93 | 비 고 |
|---------------|---------|-------------------------------|
| 보 조 | 23,655 | |
| • 도입선다변화 수송비 | 1,255 | |
| • 유개공 운영 | 1,341 | • 유개공운영비 지원 |
| • 석유품질관리 | 155 | • 석유품질검사소의 시설확충 등 |
| • 폐광대책 및 탄가대책 | 9,596 | • '89년 이후 탄가동결 |
|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 419 | • 대체에너지 및 절약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 • 해외자원조사 | 1 | |
| • 유가완충 | 10,888 | • 석유수입손실보전 |
| 투 자 | 12,939 | |
| • 비축시설 건설 | 5,272 | • 비축기지건설 9개소 등 |
| • 비축유 구입 | 6,605 | • 원유 및 제품 4백만 바렐등 |
| • 유전개발사업 | 198 | • 시추선사업 출자 |
| • 송유관사업 | 864 | • 대한송유관공사 정부지분 출자 |
| 융 자 | 35,074 | |
| • 민간비축지원 | 829 | |
| • 유전개발사업 | 3,069 | • 대륙붕탐사 및 시추, 해외유전개발사업 시추등 |
| • 에너지이용합리화 | 15,301 | •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효율향상, 대체에너지 이용촉진 |
| • 도시가스사업 | 6,242 | •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공급 재관망 건설자금 지원등 |
| • 저탄 및 석탄광개발 | 3,259 | • 하계저탄 650만톤 부족자금지원등 |
| • 중질유분해시설 | 740 | •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

| 구 분 | '79~'93 | 비 고 |
|-------------|----------|---|
| 용 자 | | |
| • 송유관 건설 | 1,202 | • 송유관시설 건설 |
| • 해외자원개발 | 1,062 | • 해외우라늄광 유연탄광 개발 |
| • 전원개발 | 3,370 | • 한전 및 수자원공사 전원개발지원 |
| 예 탁 | 8,670 | |
|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 8,670 | • '90년도까지 13,000억원 예탁후 유가완충 및 석탄가격대책으로 4,330억원 인출 |
| 계 | 80,338억원 | |

(주) : 자금기준, '79~'93실적

사업별 기금운용실적은 위의 표와 같다.

다.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

1994년 가용규모는 1994년 원유의 국내 평균도입단가를 18.00불/B로 전제하여 신규기금징수를 1.7불/B 정액으로 계산하여 전년이월금 630억원, 기금 신규징수 5,971억원, 기금운용수의 약 1,697억원 그리고 기금용자회수액을 2,696억원, 재특회수 1,800억원으로 보아 총기금조성액을 12,794억원으로 하였으며, 동기금조성액을 석유비축 장거리송유관건설 및 국내외자원개발등의 기금고유 목적사업에 4,399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 도시가스사업, 대체에너지보급, 에너지기술개발등 에너지공급 안정기반 구축사업에 3,487억원, 석탄가격안정등을 위한 석탄산업지원에 4,158억원, 그리고 국내유가완충을 위한 석유수입 손실보전에 7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 '93 | '94계획 | '94 계획내역 |
|-----|--------|--------|--|
| 수 입 | 전년이월 | 283 | 630 |
| | 운용수익 | 1,923 | 1,697 |
| | 신규징수 | 4,961 | 5,971 |
| | 용자회수 | 2,849 | 2,696 |
| | 재특회수 | 1,800 | |
| | 합계 | 10,016 | 12,794 |
| 지 출 | 석탄산업지원 | 3,760 | • 탄가안정 3,692, 폐광 406, 석탄광개발 60 |
| | 석유산업지원 | 1,951 | • 비축 1,860, 송유관 641, 유개공운영 237, 석유품질관리 15, LPG 수입기지건설 162, 중질유분해탈황 319 |
| | 기타에너지 | 3,218 | • 에너지이용합리화 1,985, 국·내외자원개발 1,165, 대체에너지보급 205, 가스사업 989, 에너지기술개발 273, 에너지절약 35 |
| | 석유수입손실 | 1,087 | • 유가완충 625, 원유도입선 다변화 125 |
| | 합계 | 10,016 | 12,794 |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환을 계기로 본 국가재정체계

가. 서 론

국가재정체계는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4년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7조 1,110억원(일반회계 예산 43조 2,500억원, 특별회계 예산 33조 8,610억원)이고, 계정간·회계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는 64조 1,095억원인데 반해 각 중앙부처장이 관리·운용하는 34개 정부관리기금의 '94운용규모도 35조 1,587억원에 이르고 있어 정부예산(순계)의 5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성 자금이 행정부내의 결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운용되는 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내에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장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각부처의 입장이 상반되 있다. 그동안 에너지분야에서 석유사업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95년부터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석유사업기금,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개편되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의 틀속에서 재원의 한계와 경직적인 예산절차를 거쳐 에너지사업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나. 예산의 편성절차

1) 기금과 예산의 비교

기금도 정부의 통합재정 수지에 포함되는 점에서 정부의 광의의 재정활동이지만 예산과 비교할 때 몇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 금 | 특 별 회 계 | 일 반 회 계 |
|------------------------|--|--|---------------------------|
| 설 치 목 적 (예산회계법) |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함 (제7조) |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함 (제 9조) | • 국가예산의 일반형태 (제9조) |
| 설 치 근 거 | • 개별법률 및 기금관리 기본법 | • 개별특별회계법 | - |
| 수 입 · 지 출 의 연 계 | • 특정한 세입과 세출의 연계 | • 좌 등 | • 원칙적으로 특정한 세입과 세출의 연결배제 |
| 재 원 조 달 형 태 | • 부담금, 출연금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함 |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 • 조세수입과 무상적 급부 |
| 예산 편 성 | 각 부처 | 재정경제원 | 좌 등 |
| 운 용 주 체 | 각 부처 | 좌 등 | 재정경제원 |
| 확 정 | 대통령승인 | 국 회 의 결 | 좌 등 |
| 예산의 집 행 | • 합목적적 차원에서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 | •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를 받음 | • 좌 등 |
| 결 산 | • 국회보고 | • 좌 등 | • 좌 등 |

2) 예산의 편성절차

예산은 매년 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그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결산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제도 개편과 관련 직접 관심사인 예산의 편성 확정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기 간 | 사 항 | 비 고 |
|-----------|-------------------------------------|--|
| 매년 2월말 | • 주요신규 및 계속 사업계획서 제출 (각부처→재정경제원)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에 타당성 심사의뢰 |
| 3.31 | • 다음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시달(재정경제원→각부처) | •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단위단가 |
| 3.31~5.30 | • 중기재정계획 연동화(재정경제원) | •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 5.31 | • 예산요구서 제출(각부처→재정경제원) | • 재원의 배분과 조정 |
| 6.1~7.30 | • 예산의 조정 | |
| 8.1~9.20 | • 예산안 수립, 관계기관협의 및 보고 | |
| 9.25이후 | • 국무회의 의결 | |
| 9월말 | • 정부안 확정 • 국회제출 | • 회계년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제출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정이유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 하기로한 재정개혁 계획에 따라 현재의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 5개 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② 주요골자

- 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법 제1조)
- 나.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 등을 담당하고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기능을 수행하도록 함.(법 제4조 내지 제6조)
- 다. 회계의 재원은 석유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및 가산금과 기존 5개 기금재산을 승계한 것 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3.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근거 및 납부·환급절차

가. 석유(윤활유 및 윤활기유 포함) 수입·판매 부과금부과(석유사업법)

1) 부과근거

가)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 가산금을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 『석유사업법상 용어의 정의』
- 석유 : 원유, 천연가스(액화한것 포함) 및 석유제품.
- 석유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것 포함)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것 포함) :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프로판, 브탄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 가스, 석유 중간제품,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

나) 부과금 징수대상자(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윤활유, 윤활기유 포함)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을 판매고자 하는 자.
- ② 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징수 대상자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

| 개정전 | 개정('94년) | 개정내용('95년부터 적용) |
|-------------------------------|----------|-----------------|
| 4. 윤활유, 윤활기유 및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 삭제 | 부과금징수 제외대상 정비 |

(주) '79년부터 석유류 수입시 부과금을 징수해 왔으며 이중 윤활유, 윤활기유는 면제받아 왔으나.

'95년부터 부과금을 징수하게 된다.

2) 부과금의 징수비율

가) 부과금의 부과기준등(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중 석유수입시에 징수하는 부과금은 수입석유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금의 부과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1994-2호 : '94.12.31)

- ① 부과금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7\$에 납부일의 환율(전신환 매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은 수입신고 물량으로 한다.

3)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통관일까지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 대리점 및 국고수납점을 포함한다)에 납부(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납부방법 : 별표1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납부확인서 : 별표2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납부영수증 : 별표3
 (주) 부과금 납부에 관한 문의
 한국석유개발공사 자금관리부 회계과 ☎ 547-5321 (교)663

나.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환급(석유사업법 제17조의 3)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부과금 환급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1994-6호 : '94. 12. 31)

제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수출
- ②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제품
- ③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석유제품중 수산청장 또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석유제품
-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에 외화로 납품하는 석유제품
- 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유제품

제2조(부과금의 환급대상자)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을 이행한 자. 다만, 제1조 제3호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로 하고,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수출을 위탁한자로 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석유제품 공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자로 하되, 수출을 위탁한 자나 석유제품공급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위탁한 자가 수출자와 합의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5호의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반출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환급대상 부과금 단가는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석유제제작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의 당해월 통관분 원유 또는 당해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의 원화 납부액을 그 부과금을 납부한 당해월 원유 또는 당해 석유제품의 통관량으로 나눈 평균부과금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석유제품공급 당해월에 통관된 석유가 없거나 당해월의 당해 석유공급 물량이 당해월 통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부과금 단가)

제4조(환급대상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 ① 수출의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은 수출면장상의 물량에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고시를 적용한다.
- ②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 제2항의 소요량 증명서 빌급기관이 빌급한 소요량증명서상의 소요량을 적용한다.

제8조(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

- ① 부과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별첨 4, 5)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②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은 신청서 접수후 10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

환급금 지급명령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 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 환급된 금액에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환급신청서(갑) : 별표 4

환급신청서(을) : 별표 5

(주) 부과금 환급에 관한 문의

한국석유개발공사 자금관리부 심사과 ☎ 547-5321 (교)664

2) 부과금 환급대상 및 심사업무처리 요령

가) 환급대상물량

| 구 분 | 대 상 물 량 | 비 고 |
|-----------------|----------------------------|-----|
| 가. 일반수출(원양어선공급) | ○수출면장상의 물량×소요량 | |
| 나. 외항선, 외항기 급유 |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상의 물량×소요량 | |
| 다. 미군납 | ○납품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상의 물량×소요량 | |
| 라. 북한반출 | ○수출면장상의 물량×소요량 | |

나) 환급신청용 서류 및 서식

| 구 分 | 증 빙 서 류 명 | | 비 고 |
|-----------------------------|-----------------------------------|---|-----|
| | 기 본 서 류 | 보 조 서 류 | |
| 가. 제품수출 | | ○B/L (면장에 선적확인된 분은 불필요) ○수출대행계약서(수출대행 방식) ○내국신용장(내국신용장 방식) ○합의서 (수출대행 및 내국신용장 방식) ○북한반출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서 | |
| 1)일반수출(원양어선 공급, 북한반출 포함) | ○수출면장 | | |
| 2) 선박급유 | ○선적허가서 | | |
| 3) 항공급유 | ○기적원료 증명원 | | |
| 4) 미군납 | ○군납물품 수령증 (군납조합확인) ○외화입금 증명 | ○송장 ○인수증 ○KOAX 납품시 SALES TICKET 명세서로 대체 | |

다) 환급심사 처리절차

| 순위 | 업무명 | 업무내용 | 비고 |
|----|-------------------|---|---|
| 1 | (총무부) 환급신청서 접수 |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부여 | ○매월 7, 17, 27일(월3회) -공휴일인 경우 익일 |
| 2 | (심사1과) 심사 착수 | ○심사에 필요한 서식 및 증빙서는 모두 첨부되었는가 ○첨부된 증빙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가. ○첨부된 증빙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가 없는가. ○이전에 환급된 사실은 없는가. ○환급신청물량은 정확한가. ○관련법 고시적용은 적정한가. ○계산상 오차는 없는가. | ○보완 및 확인사항발생시 FAX로 송수신 처리 ○환급서류의 미비로 심사불가시 신청서류의 반송 조치 |
| 3 | 심사완료 | ○검토의견 기록 ○심사필 날인 | |
| 4 | 환급액 확정 | ○내부품위 ○일상감사 수감 | ○일상감사 수감후 자금조치통보 및 해당 업체에 지급통보 |
| 5 | (회계과) 환급액 지급 | ○해당업체의 온라인 예금구좌에 입금 조치 | |

<별표1>

부과금납부방법

| 구분 | 납부절차 |
|----------------------------------|---|
| 기 존 [기 금] | <pre> graph TD A[기금납부] -- ① --> B[은행 (기금수납기관)] A -- ② --> C[납부자 (정유사)] C -- ③ --> D[수납통보] C -- ③ --> E[납부통보] E --> F[유개공] F -- ④ --> G[세관] </pre> <p>① 기금납부 → 은행 (기금수납기관) ② 기금납부 필증 → 납부자 (정유사) ③ 수납통보 → 은행 ③ 납부통보 → 유개공 ④ 통관(기금납부필증 제출) → 세관</p> |
| 변 경 [특 별 회 계] | <pre> graph TD A[부과금납부] -- ① --> B[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A -- ② --> C[납부 영수증] C -- ③ --> D[부과금확인 요청(납부영수증첨부)] D --> E[부과금 확인서 교부] E --> F[유개공 (세입징수관)] F -- ⑤ --> G[통관(납부영수증 or 부과금확인서 제출)] G --> H[세관] H -- ⑥ --> I[수납보고 및 자금이체] I --> J[한국은행] J -- ⑦ --> K[수납 보고] K --> L[통관실적 통보] </pre> <p>① 부과금납부 → 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② 납부 영수증 → 납부자 (정유사) ③ 부과금확인 요청(납부영수증첨부) → 은행 ④ 부과금 확인서 교부 → 유개공 (세입징수관) ⑤ 통관(납부영수증 or 부과금확인서 제출) → 세관 ⑥ 수납보고 및 자금이체 → 한국은행 ⑦ 수납 보고 → 유개공 (세입징수관) ⑧ 통관실적 통보</p> |

* 부과금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한 경우에는 통관후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부과금납부확인을 받아야 함.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이 징수유예 되는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가 판매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별지 제27호 서식의 확인서에 당해 징수제외, 징수유예, 부과금납부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함.

<별표2>

【별지 제27호 서식】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석유수입자 <input type="checkbox"/> 석유정제업자 <input type="checkbox"/> 석유판매업자 | | 석유사업법에 의한 부과금 | | <input type="checkbox"/> 남부 <input type="checkbox"/> 유예 <input type="checkbox"/> 제외 | | 확인서 |
| ① 사 업 자 | (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자소재지) | | | |
| ② 부 과 금 남 부 자 | (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자소재지) | | | |
| ③ 부 과 금 남 부 일 자 | | <input type="checkbox"/> 회계년도 <input type="checkbox"/> 남부장소 <input type="checkbox"/> 남부구분 | | | | |
| ④ 통관예정일 (판 매 일) | | | | 남부, 유예, 제외 | | |
| ⑧ HS 부 호 | ⑨ 품명 및 규격 | ⑩ 수량(Bbl) | ⑪ 부과금남부수량(Bbl) | ⑫ 부과금남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19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 | | | | | |
| 구비서류 : 당해 B/L 사본 1부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석유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 | | | | |
| <p>비고 : 1. 부과금을 남부하는 경우 별표 제27의 2의 서식에 의한 부과금 영수증서를 첨부하여 세입 징수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2. 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 또는 별지 제27호의 2 서식 에 의한 부과금 영수필통지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 | | |

28290-04411일
94. 12. 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표3>

【별지 제27호의 2 서식】

| | | | | | | | | | | | | | | |
|-------------|------|---|----------------|---|---|---|---|---|---|---|---|-----------------------------|--|--|
| 발행번호 | | | | | | | | | | | | (제 1 면) | | |
| 성명 (법인용) | | | | | | | | | | | | 석유사업법에 의한 부과금 영수증서(납세자용) | | |
| 사업장주소 | | | | | | | | | | | | OCR · MICR | | |
| 회계년도 | 1995 |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통상산업부 소관 | | |
| 구 분 | 년 | | | | | | | | | | | 기 분 수시분 | | |
|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부 과 금 | | | | |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은 행
 우체국

영수일자인

28290-04631 일
'94. 12. 16 승인

170mm × 105mm
(인쇄용지 특급 34g / m²)

| | | | | | | | | | | | | | | |
|-------------|------|---|----------------|---|---|---|---|---|---|---|---|---------------------------------|--|--|
| 발행번호 | | | | | | | | | | | | (제 2 면) | | |
| 성명 (법인용) | | | | | | | | | | | | 석유사업법에 의한 부과금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 | |
| 사업장주소 | | | | | | | | | | | | OCR · MICR | | |
| 회계년도 | 1995 |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통상산업부 소관 | | |
| 구 분 | 년 | | | | | | | | | | | 기 분 수시분 | | |
|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부 과 금 | | | | |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은 행
 우체국

영수일자인

28290-04632 일
'94. 12. 16 승인

170mm × 105mm
(인쇄용지 특급 34g / m²)

| | | | | | | | | | | |
|--|-----------|------|-------|-------------------------------|------|------|----------|----------|---|---|
| 발행번호 | | | | 석유사업법에 의한 부과금 자진납부서(한국은행용) | | | (제 3 면) | | | |
| 성명 (법인용) | | | | OCR · MICR | | | 계좌번호 | 185970-1 | | |
| 사업장주소 | | | | | | | 납세자번호 | | | |
| | | | | | | 세목코드 | | | | |
| | | 계좌번호 | 납세자번호 | | 세목코드 | | 금액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 회계년도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 통상산업부 소관 | | | |
| 구분 | 기분 수시분 | | | | | | | | | |
|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 부과금 | | | | | | | | | | |
| 가산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

년 월 일 납부
은행
우체국

영수일자인

28290-04633 일
'94. 12. 16 승인

170mm × 105mm
(인쇄용지 특급 34g / m²)



<별표4>

환급신청서(갑)

1) 환급신청자

주소 :

상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10일

2) 신청자 구분 :

| 1. 수출자 | 2. 수출 위탁자 | 3. 완제품 공급자 | 4. 제 품 사용자 |
|--------|--------------|---------------|---------------|
| | | | - |

3) 신청번호 :

| 기관코드 | 정수구분 | 일련번호 |
|------|------|------|
| | | - |

| 4) 신청일자 | |
|------------|--------------|
| 5) 지급은행 | 은행명 본(지)점 |
| | 코드번호 |
| | 구좌번호 |

신청사항

| 종별 | 구분 | 6) 물량 | 7) 단위 | 8) 환급율 | 9) 기준 소요량 | 10) 환급물량 (BBL or MT) | 11) 단가 | 12) 금액 |
|----------------|-------------|---|-------|--------|--------------|-------------------------|--------|--------|
| | 13) 제 품 수 출 | 일반수출 | | | | | | |
| 14) 공업원료 | 항공급유 | | | | | | | |
| | 선박급유 | | | | | | | |
| | 무상반출 | | | | | | | |
| | 미군납 | | | | | | | |
| | 소계 | | | | | | | |
| | 석유화학용 | | | | | | | |
| 15) 전기사업용 | 노말파라핀 | | | | | | | |
| | 비교제조용 | | | | | | | |
| | 소계 | | | | | | | |
| | 16) 비축용 | | | | | | | |
| 17) 발전사업용 | 17) 발전사업용 | | | | | | | |
| | 18) 집단에너지 | | | | | | | |
| | 19) 합계 | | | | | | | |
| 20) 석유 및 석유제품명 | | 21) 부과금 납부금액 | | | 22) 부과금 납부물량 | | 23)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없음 | | | | | | | | |

※ 신청서 작성은 환급신청서용 발생월별로 각각 작성

210 × 297mm
NCR지 50g/m²

〈별표5〉

환급신청서(을)

③ 신청번호

※1 자료형태별로 각각 작성

② ①란과 ②란의 자료형태 및 코드는 어떤 차조

210 × 297mm
NCR지 50g/m²